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6(화) 10:00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50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

2. 제안이유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1) 시 설 명 :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 2) 위 치 :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시범운영 초등학교
(문교초 내 3층, 금나래초 내 2층, 두산초 내 1층)

나. 위탁개요

-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2) 위탁내용 :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관리·운영
 - 가) 학교안지역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나) 시범학교 3곳 방과후학교(행정) 운영 및 마을 연계형 맞춤형 방과후 돌봄 지원 사업 수행
 - 다) 방과후학교(시범학교) 강좌 모집 및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포근센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위탁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관리 등
- ※ 인건비 (125백만원), 운영비(10백만원), 사업비(3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5. 검토의견

○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사무위탁 내용

- 금천구는 2017년 11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시범학교 3곳(문교초, 금나래초, 두산초)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최초 모델로서 우수사례로 자리 잡음.
- 학교 안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포근센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운 영 비 : 연165백만원(시비 120백만원, 구비 45백만원)

○ 검토 의견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방과후학교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 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